

# 검토보고서

2024. 10. 8.(화)

검토안건	제출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  
[전문위원 장홍용]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”

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24. 9. 27.
- 회부일 : 2024. 9. 30. (의안번호 : 24-130)

## 2. 제안이유

- 사용료 등 반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 운영자와 사용자에게 대해 대칭적으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(안 제7조제2항)
- 나.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를 준용하도록 명시(안 제8조)
- 다. 제명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수정 등 조문 정비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8조
 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입법예고 : 2024. 8. 29.~ 9. 18.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사용료 등 반환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 위탁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8조제1항 중 「청소년기본법」 을 「청소년 기본법」 으로,
  - 제3조 중 “조례에서”를 “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”로,
  - 제7조제2항 중 “납부 받은 후”를 “납부받은 후”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- 또한 제7조제2항 중 “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”를 “경우,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을 따른다”로 명문화하여 2024. 4. 4.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소비자권의 제한성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할 것이며,
- 제8조제2항에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하여 위탁 운영의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종합검토의견

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청소년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 시설 위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 및 용어를 정비하여 해당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담당부서	담당과장	담당팀장
가족행복 지원과	김은숙 (8910)	이현경 (8981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가정행복지원과 강지화
연 락 처	02-3153-8983

## 참고 자료

### 1. 관련법령 등

#### 청소년 기본법

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"분쟁당사자"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, 별표 II, 별표 III, 별표 IV와 같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공정거래위원회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2. 마포구 청소년 시설 현황 [4개소]

시설명(소재)	위탁기간	수탁기관	예산(천원)
마포청소년문화의집 (상암동)	2022.4.1.~ 2025.3.31	(사) 한국청소년재단	구:1,290,316
도화청소년문화의집 (도화동)	2022.4.1.~ 2025.3.31	(사) 한국청소년재단	구:462,400
망원청소년문화센터 (망원동)	2022.12.20.~ 2025.12.19	(사)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	구:465,911
마포구청소년 상담 복지센터(망원동)	2023.1.1.~ 2024.12.31	(사)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	국:50,051 시:106,495 구:338,400